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4. 29 선고 2020가단597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3. 25.

판 결 선 고 2022. 4. 29.

주 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7. 5. 11. 증여계약은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은 원고의 누나이고, 피고는 C의 자녀이다.

나. 원고는 2017. 6. 7. 이 법원에 C을 상대로 원고가 C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의 매매대금 중 C이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715,900,000원(= 2014. 4. 14. 수령한 부동산 매매대금 중 84,000,000원 + 2017. 1. 12. 수령한 부동산 매매대금 중 631,900,000원)의 일부인 489,000,000원과 C에 대한 대여금 11,000,000원(= 2009. 12. 경 대여금 10,000,000원 + 2014. 4. 14. 자 대여금 1,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합101835). 이에 위 법원은 ‘C은 원고에게 180,000,000원을 2018. 3.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7. 12. 11.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러나 C은 그 중 80,00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변제하지 않았다.

다.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7. 5. 12. 접수 제35598호로 2017. 5. 11.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무자 C, 근저당권자 D조합,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무자 C,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17,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D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7. 9. 15. 말소되었고, E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7. 9. 25. 말소되었다. 또한 2017. 9. 25. 채무자를 B, 근저당권자를 D조합으로 하는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대여금채권은 모두 이 사건 증여 전에 발생한 것이고, 위 2017. 12. 11.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C은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반환금 및 대여금 중 18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원고는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C이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었고, C이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서귀포시 F외 3필지에 있는 G건물 H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도 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 및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축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증여 당시의 시가는 215,000,000원이고, 그 당시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는 100,000,000원(= D조합에 대한 피담보채무 83,000,000원 + 17,000,000원)이므로 이를 공제한 115,000,000원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어 있던 부분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증여로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는지 본다. 앞서 본 증거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J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C이 이 사건 부동산 외에 73,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건물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건물에는 채무자 C, 채권자 주식회사 J, 피담보채무액 16,692,47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의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건물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증여로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C이 이 사건 증여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해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C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로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한 일반의 경우에는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참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피보전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며,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 전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가액배상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및 수익자인 피고가 취득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상당을 가액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고,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가액배상금액은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100,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피보전채권액 및 가액배상금액인 100,000,000원을 피보전채권액으로

한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증여 당시의 시가 215,000,000원에서 그 당시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액인 100,000,000원(= D조합에 대한 피담보채무 83,000,000원 + 17,000,000원)을 공제한 115,000,000원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어 있던 부분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80,000,000원(=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1. 11.경 시가 280,000,000원 - 100,000,000원)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증여는 1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C과 통모한 사실이 없고, 2005년경부터 C과 따로 생활하였기 때문에 C의 재산상태를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증여를 받은 것이므로,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채무자의 책임재산 처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4762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단순히 피고가 C과 따로 생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이 반복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수진

[별지]

목 록

1. 경기도 김포시 K 대 400㎡. 끝.

